

『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鄉試

차 미 희*

1. 서론
2. 향시의 실시 시기와 입격자 수
3. 향시의 응시자격과 赴舉都目
4. 향시의 시관과 입격자 선발
5. 결론

1. 서론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관원을 충원하는 핵심으로 기능하였으며, 선발하는 관원의 종류에 따라서 文科, 武科, 雜科로 나뉘었다. 그 중에서도 문과는, 성리학이라는 지배 이념 하에서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문반 관원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가장 중시되었다. 따라서 士大夫들은 대부분 문과에 응시하는 것을 평생의 필수 코스로, 그리고 문과에 급제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다.

문과는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관, 시험 과목, 급제 인원 등이 『經國大典』에서 상세히 규정된 式年試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식년시는 初試, 覆

*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대표논저 : 2005, 「17-18세기 조선 사대부의 독서양상과 서양교육 이해」, 『韓國史研究』 128 ; 2006, 「옛길을 따라 -과거 길」, 『역사비평』 75 ; 2012,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11,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試, 殿試의 3단계 절차로 나뉘었는데, 복시에서 급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뒤, 전시에서는 급제자의 순위만을 정하였으며, 초시는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1차 시험이었다. 식년시의 초시는 다시 응시 대상과 실시 주체에 따라 館試, 漢城試, 鄉試로 구분되었다. 관시는 居館하면서 圓點 300점을 획득한 生員과 進士를 대상으로 성균관에서 실시되었으며, 한성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과 堂下官 관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시행되었고, 향시는 전국 8도에서 각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향시는 문과 초시의 하나로, 전국 8도에서 지방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향시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으며, 향시 규정은 실제로 지방에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운영의 방향, 중앙과 지방의 관계, 향촌사회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시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과의 향시를 주제로 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¹⁾ 향시에 대한 것은 식년시를 제도적으로 설명하면서 초시의 한 종류로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시험 단계별로 응시 자격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시 단계에서 향시가 일부 다루어졌을 뿐이다.²⁾ 이것은 그 동안 문과 연구가 시험의 최종 단계와 결과, 급제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제도와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찬 연대기, 榜目, 법전 등으로 사료를 한정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경상도 禮安의 士族인 溪巖 金垓(1577~1641년)이 쓴 『溪巖日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³⁾

-
- 1) 生員進士試에 대한 연구 중에는 강원도 향시를 다룬 것이 한 편 있다. 여기에서는 憲宗 2년(1836)에 홍천에서 실시된 강원도 향시의 榜目을 통해 입격자의 지역별, 성씨별 분포를 분석하여 강원도 역사의 저변을 밝히고자 하였다(朴漢高, 1993, 「『丙申 洪川鄉試榜目』에 關하여」, 『人文學研究』 31집,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2) 曹佐鎬, 1996, 「朝鮮式年文科考」,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차미희, 1996, 「조선후기 문과제도 -응시자격을 중심으로」, 『史叢』 45; 車美姬, 1999, 『朝鮮時代 文科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 3)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7년 한국사료총서 40집으로 간행한 『溪巖日錄』을 이용하였다. 『계암일록』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번역하여 2013년 11월 4일에 중

김령은 예안 사람이고, 退溪學派로 분류되며, 정치적으로는 南人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일기의 공간적 범주가 慶尙 左道에 한정되고, 일기의 속성상 주관성의 개입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암일록』을 통해서 향시를 연구하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계암일록』은 김령이 27세(1603년)부터 65세(1641년)까지 약 38년 동안 쓴 일기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일상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문과에 급제하는 36세까지는 과거 시험 준비와 응시 과정을, 그리고 급제 이후에는 관직 생활과 향촌 생활을 해가면서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기탄없이 기록하였다.⁵⁾ 특히, 『계암일록』에는 향시에 대한 것이 매우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2장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기가 기록된 시기 동안 향시와 관련하여 설행된 문과는 모두 35회였는데, 그 중 30회에 대한 것이 『계암일록』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도 향시가 실시되는 시기와 장소, 시관에 대한 간략한 정보에서부터 시관과 응시생의 갈등, 향시 입격자와 그들의 최종 급제 여부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또한 『계암일록』이 포괄하는 시기는 宣祖 36년(1603)부터 光海君대를 거쳐, 仁祖 19년(1641)까지 이르는, 이른바 '朋黨政治의 형성 기이자 土族支配體制의 정립 시기'로서 재지사족이 중앙 정치세력 배출의 모집단이 되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때이다.⁶⁾

본고에서는 17세기 전반기 경상도 향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암일록』을 통해서 향시 운영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지방 유생들의 향시에 대한 인식과 중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시의 실시 시기와 입격자 수, 향시의 응시 자격, 향

6권으로 간행되었다.

- 4) 경상도는 행정 편의상 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다. 경상 좌도는 서울 도성에서 바라볼 때 경상도 지역의 좌측을 말하며, 낙동강의 동쪽을 가리키기도 하였는데, 울산, 양산, 동래, 청송, 예천, 풍기, 안동, 예안, 용궁, 영해, 비안, 군위, 신령, 봉화, 의흥, 밀양, 칠곡, 경산, 청도, 영양 등 30여 개 군현이 경상 좌도에 속하였다.
- 5) 최은주, 2013,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大東漢文學』 38, 239쪽.
- 6) 李泰鎮, 1985, 「朝鮮時代의 政治의 갈등과 그 해결」,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40~42쪽 ; 高석규, 2008, 「지방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446~447쪽.

시의 시관과 입격자 선발을 차례대로 검토하겠다.⁷⁾ 본고는 17세기 전반이라는 특정 시기, 경상 좌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향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후 향시 연구가 심화되고 향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향시의 실시 시기와 입격자 수

향시는 문과의 1차 시험으로서 전국 8도에서 지방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이었는데, 식년시에서는 물론 別試가 설행될 때에도 실시되었다. 국가의 중요한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의 틀을 그대로 따라 설행되는 增廣試에서 향시는 항상 실시되었으며, 향시는 '別試'가 설행될 때 실시되기도 하였다.⁸⁾ '별시'는 重試對擧 및 각종 경사 때에 설행되는 것으로서, 초시와 전시의 두 차례 절차를 거쳤다. '별시'의 초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여 600명을 입격시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향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⁹⁾ 실록에서는 '별시'의 초시가 어떤 경우에 향시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암일록』을 통해서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7) 문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 시험인 복시에서 합격하는 것과 그 합격자를 及第와 及第者라고 불렀고, 1차 시험인 초시에 붙는 것에 대해서는 '中格'이나 '中'이라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시에 붙는 사람을 '입격자'라고 하여 최종 합격자인 급제자와 구분하였다.

8) 일반적으로 별시는 식년시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별시가 실시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宣祖대에는 별시가 증광시, '별시' 등으로 분화되고, 춘당대시, 정시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들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를 '별시'로 써서 구분하고자 한다(車美姬, 앞의 책, 153~157쪽).

9) 당시는 '별시'의 초시를 "성균관에서 실시하여 입격자 600명을 선발한다."는 뜻에서 '600館試'라고 불렀다(『溪巖日錄』, 戊辰年(인조 6년, 1628) 2월 3일).

〈표〉 향시에 대한 『계암일록』의 기록 상황

구분	文科榜目	『계암일록』의 향시 관련 기록 여부	향시에 대한 기록 내용
1	乙巳(선조38년,1605) 증광시	0	시기, 시소, 시제, 시관
2	乙巳(선조38년,1605) '별시'	×	×
3	丙午(선조39년,1606) 증광시	0	시기, 시소, 시제, 시관
4	丙午(선조39년,1606) 식년시	0	시기, 시소, 시제
5	戊申(광해군즉위년,1608)'별시'	0	시소(서울), 최종 급제자
6	己酉(광해군원년,1609) 증광시	0	시기, 시관
7	庚戌(광해군2년,1610) 식년시	0	시기, 시소
8	庚戌(광해군2년,1610) '별시'	×	×
9	辛亥(광해군3년,1611) '별시'	×	×
10	壬子(광해군4년,1612) 식년시	0	시기, 시소, 시제, 시관,
11	壬子(광해군4년,1612) 증광시	0	시기, 시소, 시제, 시관
12	癸丑(광해군5년,1613) 증광시	0	시기, 시소, 임격자
13	乙卯(광해군7년,1615) 식년시	0	시기, 시소, 임격자, 최종 급제자
14	丙辰(광해군8년,1616) 증광시	×	×
15	丙辰(광해군8년,1616)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임격자, 최종 급제자
16	戊午(광해군10년,1618)증광시	0	시기, 시소, 시관
17	辛酉(광해군13년,1621)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18	甲子(인조2년,1624) 증광시	0	시기, 응시자격, 시소, 시관, 임격자
19	甲子(인조2년,1624) 식년시	0	시소
20	乙丑(인조3년,1625) '별시'	0	시기, 시소(慶山)
21	戊寅(인조4년,1626)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최종 급제자
22	丁卯(인조5년,1627) 식년시	0	시소
23	戊辰(인조6년,1628) '별시'	0	시기, 시소(淸道), 임격자
24	戊辰(인조6년,1628) '별시'	0	시기, 시소(軍威), 시관, 임격자
25	己巳(인조7년,1629) '별시'	0	시기, 시소(新寧)
26	庚午(인조8년,1630) 식년시	0	시소, 최종 급제자
27	庚午(인조8년,1630)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28	辛未(인조9년,1631)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임격자, 최종 급제자
29	癸卯(인조11년,1633) 증광시	0	시기, 응시자격, 시소, 시관, 최종 급제자
30	癸卯(인조11년,1633) 식년시	×	×
31	甲戌(인조12년,1634) '별시'	0	시기, 시소(比安), 시관, 최종 급제자
32	乙亥(인조13년,1635) 증광시	0	시기, 시소, 시관, 임격자, 최종 급제자
33	丙子(인조14년,1636) '별시'	0	시기, 시소(서울)
34	己卯(인조17년,1639) '별시'	0	시기, 시소(安東), 시관
35	己卯(인조17년,1639) 식년시	0	시기, 시소, 시관, 임격자

위의 <표>는 일기가 쓰인 시기 동안 향시와 관련하여 설행된 35회의 문과(식년시 9회, 증광시 10회, '별시' 16회)를 기준으로 향시에 대한 『계암일록』의 기록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식년시와 증광시가 실시될 때 향시는 매년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기가 쓰인 시기에 '별시'는 16회가 설행되었는데, 그 중 일기에 기록이 없는 3회를 제외한 13회 중 초시가 서울에서 실시된 것은 7회이고, 나머지 6회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음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서는 '별시'의 초시가 처음 향시로 실시된 것이 인조 3년(1625)의 '별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암일록』을 통해서는 '별시'의 초시가 향시로 실시된 이유도 찾아볼 수 있다. 김령은 인조 6년(1628)의 '별시'를 앞두고 “들으니, 대간들의 논계로 600館試를 2월 22일로 물렸으며, 지방은 향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아마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날에 서울에 士子들을 모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¹⁰⁾라고 기록하였다. 결국, 인조 3년과 인조 6년에 '별시'의 초시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실시한 것은 李适의 난(인조 2년)과 정묘호란(인조 5년)과 같은 나라 안팎의 우환을 겪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향시는 모든 문과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식년시와 증광시가 설행될 때에는 항상, 그리고 '별시'가 설행될 때에는 때에 따라 실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의 유생들은 식년시와 증광시가 설행될 때를 대비하여, 혹은 '별시'에서 향시가 실시되는 것에 맞추어 응시를 준비하였다. 향시의 실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 것도 응시생이 준비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였다.

향시가 실시되는 시험 중에서 식년시는 子·午·卯·酉年을 式年으로 정하여 3년에 한 번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초시는 식년 한 해전[上式年]인 寅·申·己·亥年의 가을(9월 상순 경)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의 봄에 개설한다는 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¹¹⁾ 또한 식년시를 설행하면서는 되도록 그 시기를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향시가 실시되는

10) 『溪巖日錄』, 戊辰年(인조 6년, 1628) 2월 3일.

11) 『經國大典』, 禮典 諸科.

시기는 대개 식년 한 해전 가을로 정해졌다.¹²⁾ 반면에 증광시와 '별시'는 대개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 설행되었고, '별시'의 경우에는 초시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향시로 치를지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향시를 실시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물론 과거 시험의 일정이 정해지면 전국 각지에 미리 통지되었다. 예조에서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생원진사시에서 문과, 무과, 잡과에 이르기까지 초시와 복시의 시험 일정은 물론 放榜의 일정까지를 明記하여 각 지방에 내려 보냈다. 그러면 관찰사는 예조에서 알려진 내용에다가 향시가 거행되는 장소를 정하여 각 鄕校와 書院에 통지하였다. 예조와 관찰사는 이후에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될 때에도 미리 그 사실을 알렸다. '별시'의 경우에도 시험을 설행하기로 하고, 초시를 향시로도 치른다는 것이 결정하면 그에 대한 일정과 시험 장소가 고지되었다.¹³⁾

시험 일정에 대한 공식적 정보를 접할 경우 김령은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宗系辨誣의 경사를 내세워 실시한 광해군 10년(1618)의 증광시에 대해 “이번 과거는 이른바 ‘辨誣增廣試’이다. 생원진사시[監試]는 7월 2일에, 문과[東堂試]는 7월 17일에, 會試와 放榜은 9월과 10월에 차례로 열리는데, 11월에 또 식년시의 초시를 열기로 이미 날짜가 정해졌다.”¹⁴⁾라고 정보를 옮겨 적었다. 그러나 김령이 이러한 정보를 접한 시점은 대체로 증광시의 향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으로 거의 시험에 임박한 때였다. 따라서 김령의 경우에도 문과에 급제하기 이전에는 이런 정보에 만족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향시에 응시하는 지방 유생들의 공통점이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 유생들에게 식년시, 증광시, '별시'가 설행될 때 실시되는 향시는 매우 중요하였다. 사실 지방의 응시생들은 설행하는 모든 문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春塘臺試, 庭試, 講聖試와 같이

-
- 12) 그러나 별시가 빈번하게 설행되어 식년시와 시기가 겹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식년시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6월 20일).
- 13) 향시의 試所는 한 장소로 고정시키지 않고 소속된 여러 읍을 돌아가면서 정하였다. 따라서 시험이 실시될 때마다 시소가 바뀌는 것이 관례였다(曹佐鎬, 앞의 책, 286쪽) ; 김경용, 2004,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教育法學研究』 16권 2호, 2쪽.
- 14)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6월 20일.

서울에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정하는 시험보다는 향시가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에 관심이 더 많았다. 지방 유생은 서울에 올라가서 치르는 시험이 과거 길과 서울에서의 체류로 인한 육체적 피곤함과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고, 이것이 다시 시험의 급락에도 영향을 미쳐서 급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령의 경우를 보면, 탄탄한 재지 지주로서의 기반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응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광해군 2년(1610)의 알성시에 응시했을 때를 보면, 짐을 싣는 말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웠고, 예안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8일이나 걸렸으며, 도중에는 계속 촌가에 유숙하면서 시냇가에서 밥을 지어먹어야 했고, 步行에 배까지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과거 길을 매우 괴로워했다.¹⁵⁾

이와 같이 지방 유생들은 서울에 올라가 치르는 시험보다 향시를 문과 급제에 도달하는 보다 가까운 길로 인식하여 향시가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 유생들은 문과 설행에 대한 공식적인 고지를 받기 이전에 증광시와 '별시'가 어떤 이유로, 언제쯤 설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자 하였다. 이런 정보들은 과거에 응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응시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에는 물론 과거 공부에 단기간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였다.

광해군 4년(1612)의 증광시는 임진왜란 때 파괴된 창덕궁을 완성한 후 왕이 그곳으로 移御하게 된 일과 왕세자의 嘉禮 두 가지의 경사를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설행되고, 초시는 4월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김령은 이 증광시가 실시될 것이라는 정보를 8개월 전인 광해군 3년(1611) 8월에 다음과 같이 접한다. “洪 察訪의 편지를 보았는데, ... 동궁의 가례는 10월 24일로 (동궁빈은) 朴自興의 딸로 정해졌다고 한다. ... 10월쯤에 반드시 별시가 있을 것이니, 동궁이 가례를 올리기 때문이다. 移御하는 것도 10월로 정해졌으므로 증광시도 보일 것이라고 한다.”¹⁶⁾

당시 식년시의 일정 상 광해군 4년에는 이미 식년시의 설행이 예정된

15) 『溪巖日錄』, 庚戌年(광해군 2년, 1610) 8월 18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4일.

16) 『溪巖日錄』, 辛亥年(광해군 3년, 1611) 8월 9일.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증광시까지 설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 김령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과거 준비와 응시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증광시에서 급제한다. 귀중한 시험 정보를 준 홍찰방은 김령의 큰 처남으로, 황산찰방을 지낸 洪劫(1563~?년)이었다. 홍할의 아들이자 김령의 처조카인 洪遇亨(1585~1655년) 역시 김령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려 다녔는데, 홍할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처남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과거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알려주었다.¹⁷⁾ 김령이 처가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은 다시 그의 친인척 및 친구들과 공유되면서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¹⁸⁾ 이것은 단지 김령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령 역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서 계속 듣는 것으로 볼 때, 향시가 언제 실시될 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는 지방 유생의 혈연적·사회적 인맥을 통해 입수, 공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 유생들은 향시를 문과에 급제하는 보다 가까운 길로 인식하고 향시의 실시 시기와 같은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런 지방 유생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중요 관심사는 향시에서 몇 명을 입격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향시가 실시되는 식년시의 경우 『경국대전』에 입격자 수가 규정되었다. 식년시의 초시에서는 모두 240명을 선발하였는데, 입격 숫자는 초시의 시험 종류 별로 달라서 관시에서는 50명, 한성시에서는 40명, 향시에서는 150명을 각각 입격시켰다. 향시의 입격자는 다시 전국 8도로 할당되어 경기도 20명, 충청도와 전라도 각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와 평안도 각각 15명, 황해도와 평안도 각각 10명이었다.¹⁹⁾ 증광시의 경우에도 식년시 초시의 입격자 수와 같았다. 따라서 응시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초시에서 입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증광시와 초시에서 600명을

17) 최은주, 앞의 논문, 250쪽.

18) 『溪巖日錄』에 의하면, 김령은 光山 김씨의 세거지인 예안현 외내[烏川]에서 본가의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살며 평생 儀禮를 실행하는 것에서는 물론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하다시피 하였으며, 퇴계의 後學이라는 학문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李永道와 李有道(李滉의 손자와 종손자), 金是樞(金誠一의 손자), 柳穆(柳成龍의 아들) 등의 친구들과도 교유하였다.

19) 『經國大典』, 禮典 諸科.

입격시키기는 ‘별시’였다.

우선, 대증광시의 경우에는 증광시보다 급제 인원을 7명 더 늘여 40명을 뽑았고, 이에 따라 초시의 입격자 수를 늘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광해군 5년(1613)의 대증광시는 국왕의 尊號를 올리는 경사와 왕세자가 중국 황제로부터 冕服을 하사받은 경사를 기념하여 실시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예조의 요청에 의해 선조 23년(1590)에 실시된 대증광시의 전례에 따라서 40명을 급제시키기로 결정하고, 초시의 입격자 수도 늘여서 관시에서 30명, 한성시에서 18명, 경기 14명, 충청도와 전라도 16명, 경상도 18명, 강원도와 평안도 6명, 황해도와 함경도 5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대증광시의 초시에서는 종래 증광시의 240명에다가 134명을 더 추가로 입격시키도록 하였다.²⁰⁾ 경상도 향시만을 놓고 보면, 종래의 30명에다가 18명을 추가하여 총 48명을 입격시키는데, 시소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각 24명(15명+9명)씩을 뽑으면 되었다.

그런데 『계암일록』에 의하면, 이 대증광시의 초시가 실시될 때에는 향시의 입격자 인원을 전혀 늘리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김령은 “잊어버린 것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령은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상 좌도에서 15명 이외에 입격자를 추가로 뽑는다는 소식에 접한 뒤에 “가소롭다.”라고 표현하였다.²¹⁾ 이는 대증광시의 향시에서 입격자 수를 늘이는 것이 응시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증광시를 실시하는 입장에서선 ‘무심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바로 잡으려는 처사에 대한 지방 유생들의 냉소적 반응을 대변하였다. 이후 광해군 10년(1618)의 대증광시에서는 차질 없이 향시의 입격자 수를 늘여 뽑았다.²²⁾ 그러나 광해군대에 실시된 세 차례의 대증광시 모두가 당시 정국을 이끌고 있던 대북 세력을 확대시키는 것에 이용됨으로써,²³⁾ 광해군 8년(1616)의 대증광시가 끝난 뒤, 김령은 “이번 동당시의 급제자 방이 붙었는데, 영남 좌도에서는 다 떨어졌다.”²⁴⁾라고 씁쓸함을 남겼다.

20) 『光海君日記』 권60, 광해군 4년 윤11월 18일(丁丑).

21) 『溪巖日錄』, 癸丑年(광해군 5년, 1613) 4월 1일.

22)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7월 28일.

23) 車美姬, 앞의 책, 167-168쪽.

24) 『溪巖日錄』, 丙辰年(광해군 8년, 1616) 3월 20일.

지방 유생들이 향시의 입격자 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또 다른 시험은 '별시'였다. 인조 6년(1628) 세자의 가례를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설행된 '별시'에서는 초시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경상 좌도의 향시가 끝난 뒤에 김령은 "방목을 보니 30명뿐이었다. 옛날의 사례로는 45명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²⁵⁾라고 기록하였다. '별시'의 초시에서 경상도의 좌도와 우도까지 합하여 옛날에는 90명을 입격시켰는데, 이번에는 60명만을 입격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남긴 것이다. 예안 지역 김령의 불만은 한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인조 6년의 '별시'가 끝난 뒤, 중앙에서는 '별시'의 초시 입격자 수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柳成龍의 제자인 승지 李掄이 있었다.

'별시'의 초시는 대체로 서울에서 실시하여 600명을 입격시켰는데, 입격자 숫자가 비슷한 생원시와 진사시의 초시에서 각각 지역별로 입격자를 할당한 것을 고려하여, 경상도는 90명, 충청도와 전라도는 각각 80명을 입격시켰다. 그런데 인조 3년(1625)에 '별시'를 실시할 때 예조에서는 이를 고증할만한 文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에 입격자 수를 지역별로 할당한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참작해 보지도 않고, 막중한 향시의 입격자 수를 경솔하게 제멋대로 결정하여 서울 300명, 경상도 60명,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50명씩을 뽑았기 때문에 三南의 士子들이 매우 불평하였다. 그런데 올해(인조 6년)에 '별시'를 실시하면서 다시 인조 3년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면서, 그것을 영구히 恒式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 이준의 핵심적 주장이었다.²⁶⁾

이준은 본래 '별시' 초시의 입격자 수가 얼마였는지를 고증할 만한 문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조 24년(1591)의 '별시'에서 급제했기 때문에 당시 경상도 향시의 입격자가 90명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맞서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 논의는 좌의정 金堯, 우의정 李廷龜 등 대신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시' 초시의 지역별 할당 액수를 서울은 300명에서 230명으로 줄이고, 경상도의 경우에는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리

25) 『溪巖日錄』, 戊辰年(인조 6년, 1628) 3월 3일.

26)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7월 17일(丙子).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⁷⁾

실제로 인조 3년의 '별시'를 실시할 때 예조에서 초시의 입격자 수를 지역별로 할당한 것에 대해 근거할만한 문안이 없다고 아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조 재위 초 이괄의 난으로 문안이 소실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준의 경우처럼 '별시' 급제자들이 증양 도처에 재직 중이고, 김령의 경우처럼 지방의 사족들도 그 입격자 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조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다면, 본래의 정해진 숫자대로 입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조 3년에 '별시'의 초시에서 서울의 입격자 수를 늘이고, 삼남의 입격자 수를 줄인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조 3년의 '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조 3년의 '별시'는 초시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향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별시'와 차이가 있었다. 결국, '별시'의 초시를 향시로 실시하는 첫 시험에서 향시의 입격자 수를, 경상도를 예로 들면, 본래의 90명에서 60명으로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지방 유생들에게 있어서 초시를 서울에서 보느냐, 지방에서 보느냐가 급제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것을 연결해보면, 인조 3년 '별시'의 초시에서 삼남의 입격자 수를 줄인 것은 지방 유생들의 급제 가능성을 조정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²⁸⁾

'별시' 초시의 입격자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중앙에서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안 사족 김령의 불만은 '삼남 유생들의 불평'으로 이어졌고, 삼남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배경으로 경상도 출신의 승지가 거의 원래대로 복귀시켰다. 이는 재지사족들을 기반으로 하는 봉당정치가 운영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하던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향시의 입격자 수가 지

27)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8월 6일(甲午).

28) 지방 유생들은 향시가 실시되는 식년시와 증광시를 통해서 문과에 급제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별시'를 통해서까지 문과에 급제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자, 이를 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이어지는 지방 유생들의 반발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는 있지만, 지방 유생들의 문과 급제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후 좀 더 분명한 사료 제시와 설명이 필요하다.

방 유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향시의 응시자격과 舉子都目

향시가 언제 실시되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향시에서는 몇 명이나 입격시키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방 유생들은 향시 응시에 차질에 없도록 응시 자격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준비해야 했다. 문과에 응시하는 부류는 크게 유생과 堂下官 관원으로 나뉘어졌다. 유생은 다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서울의 四學과 지방의 學校에 재학하는 學生과 校生들로 나뉘었으며, 학생과 교생의 경우 과거에 응시할 때에는 주로 幼學이라는 職役을 칭하였다. 蔭叙나 薦舉 등을 통해 이미 관원이 된 사람도 通訓大夫 이하의 당하관원일 경우에는 문과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초시에 나갈 때 반드시 한성시에 응시하게 하고, 향시에는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⁹⁾ 결국,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주로 생원과 진사, 교생들이었다.

향시에 응시하는 생원과 진사, 교생들이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것은 四祖單子였다. 다만, 四祖 내에 顯官이 없는 응시생의 경우에는 친족 또는 평소 아는 高官이나 京在所의 관원이 작성한 保單子와, 지방 응시생은 京在所 3명, 서울 응시생은 吏曹과 兵曹 관원 3명의 서명을 錄名官에게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이 단자 종류들은 『경국대전』에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류들을 적발해 낼 목적으로 요구된 것이어서, 응시생 모두가 제출해야 했다.³⁰⁾

『계암일록』에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試紙를 갈무리했다.”, “名格를 마름질했다.”라는 기록만 나올 뿐, 사조단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³¹⁾ 그러나 김령과 동시대의 인물인 金澤龍(1547~1627년)의 일기에는 “응시하는 아

29) 『經國大典』, 禮典 諸科.

30) 죄를 범해서 영원히 敍用되지 못하게 한 사람, 贓吏의 아들, 再嫁와 失行한 婦女의 자손, 서얼 자손 등이 금지 부류에 해당하였다(車美姬, 앞의 책, 23-27쪽).

31) 『溪巖日錄』, 甲辰年(선조 37년, 1604) 12월 7일 : 『溪巖日錄』, 壬子年(광해군 4년, 1612) 4월 18일.

들을 위해 名楮를 자르고 마름질하여 皮封과 錄名單子를 썼다.”³²⁾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종이를 구입하여 試券을 준비하면서 사조단자 등도 함께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지 갈무리’나 ‘명저 마름질’ 운운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항시 응시생들이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것은 생원과 진사, 幼學이 각각 달랐다. 우선 유학이 초시에 응시할 때에는 『小學』에 대한 考講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照訖帖을 제출해야 했다.³³⁾ 이 조흔첩은 과장의 혼란을 막을 목적으로 응시생에게 요구된 것으로 과장에 들어갈 때 혹은 과장 안에서, 심지어 과장에서 나올 때에도 계속 점검받았기 때문에 응시생이 계속 소지해야 하고 있어야 했다.³⁴⁾ ‘초시 고강’이 인조 대에 계속 실시되었음은 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³⁵⁾ 이는 『계암일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인조 원년(1623) 김령의 아들 耀亨과 조카 光鐵, 종손자 礎이 ‘초시 고강’에 대비하기 위해 김령의 집에 모여 『소학』을 읽고, ‘초시 고강’을 치르기 위해 함께 안동으로 갔다.³⁶⁾

幼學이 항시에 응시하기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초시 고강’을 마쳤음을 증빙하는 조흔첩이었다면, 생원과 진사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그것은 성균관에 거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圓點의 획득을 증빙하는 것이었다. 생원과 진사들이 식년시의 한성시나 항시에 응시할 때 필요한 원점은 150점이었고, 증광시와 ‘별시’의

32) 『操省堂日記』, 광해군 9년(1617) 6월 25일(김택룡 지음, 하영희 역, 2010, 『조성당일기』, 한국국학진흥원, 335쪽. 원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의 서비스에서 확인함).

33) 여기에서 유학에게만 ‘초시 고강’이 요구된 것은 생원과 진사의 경우에도 생원진사시의 초시에 응시할 때에는 유학이라는 직역으로 응시하면서 ‘초시 고강’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明宗대부터 실시된 ‘초시 고강’은 그 범위가 『중용』과 『소학』이었는데, 임란 이후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면서 『소학』을 다시 강조하여 범위를 『소학』으로만 국한시켰다(차미희, 앞의 논문, 147~148쪽).

34) 김경용, 앞의 논문, 4쪽

35)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5월 15일(甲辰) ;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9월 21일(戊申).

36) 『溪巖日錄』, 癸亥年(인조 1년, 1623) 9월 2일, 9월 15일. 한편 『계암일록』에는 ‘초시 고강’에 대한 기록이 인조 10년, 인조 11년에도 계속되었다(壬申年(인조 10년, 1632) 6월 24일 ; 癸酉年(인조 11년, 1633) 1월 10일).

한성시나 향시에 응시할 때에는 8~30점 정도의 원점이 요구되었다.³⁷⁾ 생원과 진사가 응시에 필요한 원점을 획득하였음은 성균관에서 발급해준 明文을 바탕으로 생원과 진사가 거주하는 지역의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한 뒤 ‘일정한 문서’를 만들어 증빙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이와 같이 사조단자 종류, 조흘첩, 원점 문서 등은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응시생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개별적으로 녹명관에게 제출하는 증빙 서류였다. 향시의 실시를 앞두고 응시 자격과 관련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응시생만이 아니었다. 수령 역시 과거 응시생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했는데, 이 문서는 赴舉都目, 舉子都目으로 불리었다. 이 문서는 각 지역의 수령이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의 명칭을 붙여 부르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예안현의 수령이 작성한 부거도목은 禮安都目으로 불리었다.³⁹⁾

수령이 부거도목을 작성할 때 기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향교의 교생들이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 시기에는 교생 중의 일부만을 작성 대상으로 삼는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향교 교생은 양반 신분층과 서얼, 평민 신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조 초반부터 군제 개편에 따라 군역을 늘릴 목적으로 “일반 유생과 향교 교생들을 대상으로 考講을 실시하고, 고강에서 떨어지는 자는 充軍시킨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인조 22년(1642)에는 ‘各道校生考講事目’이라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원진사시의 응시생에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 사족으로서

37) 본래 생원진사시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었고, 여기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그러나 생원과 진사에게는 반드시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었고, 식년시의 경우 원점 300점을 획득한 생원과 진사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館試를 실시하여 나름대로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원과 진사들은 대체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공부하다가 식년시의 한성시나 향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中宗대에 官學을 진흥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점 규정이 마련되었다(車美姬, 앞의 책, 42~49쪽, 54~58쪽).

38) 이러한 추론은 태종 17년, 예조에서 상세하게 마련한 科擧法에 의거하였다(『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己巳)).

39) 『仁祖實錄』 권26, 10년 5월 6일(癸卯) : 『溪巖日錄』, 癸酉年(인조 11년, 1633) 1월 10일 : 『溪巖日錄』, 丙子年(인조 14년, 1636), 6월 29일.

의 최소 기준인 생원과 진사가 되기 위해 생원진사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생들이 늘어났고, 생원진사시의 초시에 입격하기만 해도 고장을 면제시키면서 응시생들은 더 증가하였다.⁴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령들은 교생 모두를 부거도목에 올렸는데,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열린 생원진사시의 향시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상 좌도의 예를 보면, 인조 7년(1629) 榮川에서 열린 식년시의 생원진사시 향시에서는 응시생이 이전보다 9백 명이 더 늘어난 2천 3, 4백 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감 시간을 넘긴 뒤에도 멋대로 시권을 제출하거나 기절하는 사람, 연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대해 김령은 “수령이 都目을 자세하게 살펴서, 응시가 가능하다고 추정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일체 도목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¹⁾

이후 인조 10년(1632)에는 향시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조에서 “앞으로 과거를 볼 때는 該道の 監司로 하여금 각별히 수령을 신칙하여 擧都目에 雜類가 섞여서 작성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살피게 하고, 수령이 명령대로 하지 않을 경우 중죄로 다스림으로써 국가 시험의 권위를 높이고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은 계기를 삼으십시오.”⁴²⁾라고 요청하였다. 김령이 부거도목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목한 응시생들을 예조에서는 ‘잡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들은 향교에 입록된 非양반 신분층의 교생을 말하였다. 따라서 이후 수령은 생원진사시,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40) 양반 신분층은 교생의 정원을 차지[額內校生]하고 있었지만 향교에 적을 두었을 뿐 공부하지 않았으며, 서얼과 평민 신분층은 정원 외로 들어와[額外校生] 있었다. 교생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평민 신분층이 교생으로 들어온 것은 군역을 피할 목적이었으며, 양반들은 이미 양반이라는 신분 그 자체로 군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굳이 향교에 적을 둘 필요는 없었지만, 향교는 여전히 제지사족의 자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출입은 계속 되고 있었다(尹熙勉, 1990, 『朝鮮後期 鄕校研究』, 일조각, 18~25쪽; 朴連鎬, 1986, 「仁祖~肅宗 年間の 軍役과 校生考講」, 『정신문화연구』 28, 209~215쪽; 박현순, 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史學研究』 93, 124~127쪽).

41) 『溪巖日錄』, 己巳年(인조 7년, 1629) 8월 11일.

42) 『仁祖實錄』 권26, 10년 5월 6일(癸卯).

을 작성하면서, 향교 교생 중 非양반 신분층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부거도목에서 제외시키고, 양반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⁴³⁾

수령이 향교에 입학된 양반 신분의 교생을 대상으로 부거도목을 작성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려했던 또 다른 조건은 儒罰이었다. 이는 『계암일록』에 “예안 현감은 악한 것을 심히 미워하여 琴絃이 패악하고 형편이 없었으므로 赴擧都目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장차 처벌할 죄를 정하려고 한다. 대개 訟事로 인하여 드러났던 것이다. 관아의 정사가 공명정대하여 전혀 전임 수령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⁴⁴⁾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⁴⁵⁾ 재지사족지배 체제가 확립, 운영되는 가운데 향교를 중심으로 유벌이 시행되고 관련 내용이 향교의 校案에 기록되면서, 유벌을 받은 사람은 解罰이 되기 전까지 과거도목에 오르지 못하였다.⁴⁶⁾ 양반 신분의 교생이라고 모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응시 당시에 유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령이 부거도목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나머지 기준은 응시생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응시 자격은 초시 중에서도 향시에서만 요구된 것으로, 향시의 입격자가 전국 8도로 할당된 것과 연결되었다. 조선은 개국 이후 식년시의 향시 입격자 수를 전국 각 지역의 군

43) 이것은 이후 孝宗대에 관학 진흥의 목적으로 추진된 규정 중 “양반 유생 중 서울에서는 四學의 靑衿錄에, 지방에서는 校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부거도목에 오르지 못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7월 28일(癸卯) : 『承政院日記』 131책, 孝宗 5년 4월 30일(己丑)).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의 양반들도 과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향교에 적을 두되, 靑衿錄이라는 별도의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들을 교생이라는 명칭 대신 儒生으로 칭하면서 비양반 신분층의 교생과 구분시켰다(尹熙勉, 앞의 책, 26쪽).

44) 『溪巖日錄』, 癸酉年(인조11년, 1633) 1월 10일.

45) 금작의 불미스러운 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일이 있는지 6년 뒤 김령의 종손자 礎은 금작과 이름의 발음이 같음을 부끄럽게 여겨 이름을 礎으로 고치기까지 하였다(『溪巖日錄』, 己卯年(인조 17년, 1639) 2월 8일 : 3월 13일).

46) 朴賢淳, 2006,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44-145쪽.

현과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였다.⁴⁷⁾ 향시의 입격자가 전국 8도에 각각 할당되어 있으니, 8도의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생만이 해당 도의 향시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응시생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냐의 기준은 좀 더 세분화되었다. 8도 중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에는 시소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 네 도의 경우 워낙 크기가 커서 시소를 둘로 나누어야 향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응시생이 試官과 친인척일 경우,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응시할 경우 서로를 피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⁴⁹⁾ 시소를 둘로 나누면서는 입격자의 수도 반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식년시의 경상도 향시의 경우 좌도와 우도에서 나누어 각각 15명씩 입격자를 뽑았다. 결국, 8도 중에서 네 도의 경우에는 향시의 입격자가 다시 할당된 셈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향시 응시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좌도에 속하면 좌도 향시에, 살고 있는 지역이 우도에 속하면 우도 향시에 응시해야 했다. 각 지역의 수령이 부거도목에서 응시생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령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생을 부거도목에 올릴 때 예외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道內의 수령과 그 자제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하관 관원이 문과의 초시에 응시할 때에는 한성시에 응시하도록 하고, 향시에는 응시하지 말도록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현실적으로 중앙 관직에 재직 중인 응시생은 한성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에 지방의 수령으로 있는 응시생은 한성시에 응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지방 수령은 향시에 응시하는 것을 선호

47) 과거시험에서 능력주의 원칙만 고수할 경우 어느 한정된 지역에 문과 급제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집권제의 강화를 위협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향시에서 입격자를 지역별로 할당하였다(車美姬, 앞의 책, 127-128쪽).

48) 이 규정이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혼인한 뒤 처가에 와서 살고 있어 해당 도의 戶籍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응시생의 경우에는, 明宗대부터 ‘처가가 父祖 이상 대대로 입적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응시를 허락하도록 하였다(차미희, 앞의 논문, 150쪽).

49)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경우에는 시소를 나누지 않았다(『詳定科擧規式』, 規式).

했다. 대개 수령들이 도내 향시의 시관으로 임명되어 수령들끼리의 안면이나 인맥을 통해 입격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이유로 감사와 수령의 자제들도 향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⁰⁾

도내의 수령과 그 자제들은 모두 임기 동안에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향시에 응시하고, 더 나아가 입격까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향시에 응시하는 지방 유생의 입격 가능성을 줄어든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에서 ‘별시’ 초시의 입격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 지방 유생들이 보였던 반발을 상기해 보면, 이 문제 역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했다. 실제로 광해군 4년(1612) 중앙에서는 감사와 수령의 자제들이 향시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응시생 본인은 물론, 이들의 응시를 허락한 해당 지역의 수령과 해당 시관을 처벌하도록 결정하였다.⁵¹⁾

이제 남은 문제는 도내 수령의 향시 응시였다. 이에 대해 김령은 “淸道郡守 閔汝纘, 比安縣監 李大圭가 다 문과에 응시하러 갔고, 聞慶縣監 李景節은 녹명관으로 문과에 응시하러 갔다.”⁵²⁾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된 문과는 봉화에서 실시된 인조 11년(1633) 증광시의 경상 좌도 향시를 말한다. 청도와 비안은 경상 좌도에 속한 군현인데 그곳이 수령들이 경상 좌도의 향시에 버젓이 응시하고 있으며, 문경은 경상 우도에 속한 군현인데 그곳의 수령이 경상 좌도의 녹명관으로 오면서, 자신이 맡은 녹명 일이 끝나면 곧바로 향시에 응시한다는 것이 김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향시에 응시하는 수령의 범위는 察訪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으며, 김령은 이들이 향시에 입격하는 것을 “보통 있는 일이었다.”⁵³⁾라고 표현하였다.

수령들의 향시 응시는 수령의 자제들이 향시에 응시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 유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중앙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들의 향시

50) 『成宗實錄』 권115, 성종 11년 3월 21일(辛丑) : 『成宗實錄』 권145, 성종 13년 윤8월 13일(己卯).

51) 『光海君日記』 권56, 광해군 4년 8월 20일(辛巳) : 『光海君日記』 권84, 광해군 6년 11월 2일(庚戌).

52) 『溪巖日錄』, 癸酉年(인조 11년, 1633) 2월 10일.

53) 『溪巖日錄』, 癸亥年(인조 1년, 1623) 8월 27일 : 『溪巖日錄』, 戊辰年(인조 6년, 1628) 8월 26일.

응시는 계속되었다.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후대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보면, 수령의 향시 응시를 금지하고 한성시에 응시하게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흥년이 들었는데도 수령이 진흥에는 힘쓰지 않고, 한성시에 응시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폐를 끼친다든지, 수령과 찰방은 생원진사시의 향사에서 차비관으로 동원되어야 했는데, 이들이 없어서 향시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⁵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령은 부거도목을 작성하면서 도내 수령과 찰방의 향시 응시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령은 부거도목을 작성할 때, 향교에 적을 둔 양반을 기본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중 유벌을 받지 않은 자를 추렸다. 또한 응시생이 실제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도내의 수령이나 찰방이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였다.

수령에 의해 작성된 부거도목들은 각 지역이 속한 곳에 따라서 경상 좌도나 우도의 시소로 보내졌고, 이를 토대로 녹명이 실시되었다. 경상 좌도를 중심으로 보면, 예안을 비롯한 30여개 군현의 수령들이 작성한 부거도목은 경상 좌도의 향시가 실시되는 시소에 모아졌다. 그러면 녹명관들은 향시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 수령들이 작성해온 부거도목을 바탕으로 응시생 각자가 준비하여 제출한 사조단자 종류, 조흔첩, 원점 문서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응시생의 이름을 명부에 적어[錄名] 다음날 향시 과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4. 향시의 시관과 입격자 선발

향시 응시생들이 시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입수하고, 입격자 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며, 시험에 임박하여 응시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한결같이 바란 것은 향사에서 입격하는 것이고, 시관들이 公正

54) 『顯宗改修實錄』 권2, 현종 2년 7월 22일(己巳). 수령의 도내 향시가 금지된 것은 肅宗 3년이었고, 이때의 규정은 이후 『續大典』에서도 법제화되었다(차미희, 앞의 논문, 151쪽).

하게 입격자를 선발해주는 것이었다. 대체로 시관은 上試官, 參試官, 監試官, 差備官으로 나뉘어졌다. 상시관과 참시관은 시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면서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감시관은 시험의 채점 과정과 차비관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차비관은 시험 장소의 안팎에서 시험의 각 과정마다 필요한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였는데, 앞서 언급된 녹명관은 차비관에 해당되었다.⁵⁵⁾

향시의 시관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매우 간단하였다. 각 시소마다 3명의 시관을 두도록 하고, 각도의 관찰사가 差使員을 정하여 錄名하고 試取토록 한다는 것뿐이었다.⁵⁶⁾ 이에 따라 각도의 관찰사는 향시의 각 시소마다 상시관 1명, 참시관 2명을 배치하였으며, 수령과 향교 敎官을 시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향시에는 臺諫이 담당하는 감시관의 규찰이 없어 시관의 行私가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⁵⁷⁾

이후 명종대에는 과거 시험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가운데, 향시의 시관에 대한 규정도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우선, 향시의 상시관을 京官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경관은 일찍이 侍從과 대간을 역임하고, 원래 본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경관은 지방에 파견한 監察[臺御]도 겸직하게 하여 상시관이 감시관의 업무까지도 맡게 하였다. 또한 참시관에는 都事, 評事, 수령 중에서 剛明하고 才學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入門官, 禁亂官 등을 수령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차비관의 구색도 갖추어 나갔다.⁵⁸⁾

참시관과 차비관은 맡은 일의 중요성 때문에 모두 문과에 급제한 문신 수령을 임명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참시관에만 해당되었다. 차비관의 경우에는 문과 출신 수령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문음 출신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수령에 재직하면서 문과에 계속 응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한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향시의 시소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령, 찰방, 교관들을 참시관과 차비관에 임명할 때 좌도와 우도가 서로 바꾸는 ‘換差’가 관

55) 차미희, 2012,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20쪽.

56) 『經國大典』, 禮典 諸科.

57) 曹佐鎬, 앞의 책, 288쪽.

58) 『詳定科擧規式』, 規式.

례로 자리 잡았다.⁵⁹⁾

경상도 좌도와 우도의 향시에 상시관으로 경관이 임명되어 내려오고, 참시관에 좌도와 우도의 수령들이 바뀌어 임명되는 관례는 『계암일록』에서도 매 시험 때마다 확인된다.⁶⁰⁾ 예를 들면, 광해군 10년(1618)의 증광시 향시에서 경상 좌도에는 正言으로 있던 鄭良胤이 京試官으로 내려왔고, 참시관에는 金山郡守 柳仲龍, 高靈縣監 申景汶이 임명되었으며, 경상 우도에는 內資寺 正으로 있던 辛光業이 경시관이 되었고, 安東判官 任羲之가 참시관에 임명되었다.⁶¹⁾

향시에 경시관을 내려 보낸 것은 시험을 공정하게 실시하려는 의도였다.⁶²⁾ 그러나 향시의 입격자 선발에는 경시관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선조 39년(1606)의 증광시는 선조의 재위 40주년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 때 경상 좌도의 향시는 아예 시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罷場에 이르렀다.⁶³⁾ 이에 대해 사헌부에서는 “지난번 경상 좌도 中場의 시험 날에 시관이 무리하게 부당한 시험 문제[試題]를 내어 많은 선비들을 격노하게 하고 끝내 파장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랄 일입니다. 그 도의 시관을 모두 파직시키소서.”⁶⁴⁾라고 요청하였다. 지금까

59) 『承政院日記』 124책, 孝宗 3년 9월 11일(己卯).

60) 식년시와 증광시의 향시에서는 경관으로 내려온 상시관들이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모두 주관하였으며, 참시관의 경우에는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각각 별도로 임명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때에도 참시관은 물론 '환차' 임명되었다. 한편, 『계암일록』에는 대체로 경관으로 내려온 상시관을 京試官으로 표현하고, 참시관을 간혹 副試官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61) 『光海君日記』 권112, 광해군 9년 2월 22일(丁巳) :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7월 23일, 7월 28일 ; 『光海君日記』 권113, 광해군 9년 3월 26일(辛卯).

62) 당시 식년시와 증광시의 향시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응시생들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우선, 初場에서는 경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보기 위해 四書疑, 五經義, 論 중에서 2편을 부과하였으며, 中場에서는 문학적 능력을 보기 위해 表, 箋 중에서 1편, 賦, 頌, 銘, 箴, 記 중 1편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終場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능력을 시험하여 對策 1편을 부과하였다. 시관은 이 三場의 종합점수에 의해 입격을 결정하였다. '별시'의 향시는 앞의 초장과 중장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였다(車美姬, 앞의 책, 66쪽).

63)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8월 2일.

64) 『宣祖實錄』 권202, 선조 39년 8월 8일(甲辰).

지의 연구에서는 향시의 과정에 대해 이처럼 간단한 중앙의 보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령은 이 향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과정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경상 좌도의 향시는 龍宮에서 실시되었으며, 홍문관 부교리를 지내던 趙澱이 경시관으로 내려왔고, 참시관에는 尙州牧使 金尙容이 임명되었다.⁶⁵⁾ 그런데 初場부터 論의 시제를 둘러싸고 시관과 응시생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시관은 계속 시제를 바꾸어야 했다. 처음 논제는 ‘공자는心を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응시생들은 이미 그것을 주제로 한 글이 있는데다가, 『心經』에도 正論이 있다고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다시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와 같이 여긴다.’를 논제로 출제했지만, 응시생들은 신화된 자로서 차마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세 번째 논제는 『춘추』에는 월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응시생들은 이것도 先儒들의 정론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시제를 둘러싼 시관과 응시생의 갈등은 中場에서도 계속되어, 처음 출제한 表題 ‘豊人已製’와 賦題 ‘義人已製’를 응시생들이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시관들이 새로 바꾸어낸 표제가 ‘예조에서 서울과 지방의 시험장에 요청하기를, 일체 시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여 士子들의 浮薄한 습속을 진정시켜야 한다.’였고, 부제는 ‘節義는 천하의 큰 防閑이다.’였다.⁶⁶⁾

경시관 조습은 이미 초장 단계에서부터 응시생들에게 “일찍이 영남은 鄒魯와 같은 풍속이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선비들의 습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右道와 다름없으니,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라고 욕을 하였다.⁶⁷⁾ 그리고 중장 단계에서 시제를 바꾸어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士子들의 浮薄한 습속’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주제로 삼아 새로운 시제를 출제한 것이다. 응시생들은 당연히 이 새 시제에 대해 ‘놀라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따질 것도 없이 중일 한가롭게 앉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시험장을 빠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중론을 모으고’, 그대로 실행하였다.⁶⁸⁾

65) 『宣祖實錄』 권194, 선조 38년 12월 29일(己巳) : 『光海君日記』 권66, 광해군 5년 5월 17일(甲戌).

66)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20일.

67)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18일.

당시 경상 좌도의 응시생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영남의 퇴계학과, 남인으로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행 중이던 五賢의 文廟 從祀 논의는 그 자부심에 불을 지폈다.⁶⁹⁾ 응시생들은 이제 곧 급제하여 중앙 관직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나 경시관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시제를 낼 때마다 일일이 문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경시관 조즙에 대한 응시생의 불신은 이미 比安에서 실시된 생원진사시의 향시에서부터 배태되었으며,⁷⁰⁾ 응시생에 대한 조즙의 분노도 이때부터 쌓이다가,⁷¹⁾ 결국, 문과 향시에서 그 갈등이 폭발했다. 조즙은 문과 출신으로 홍문관 부교리를 지내다가 경시관으로 내려온 인물이었지만, 출제할 때마다 응시생들이 온갖 이유를 내세워 계속 새로이 출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마침내 경상 좌도를 경상 우도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응시생을 모욕하고, '부박한 습속' 운운의 폭언을 가해 파장에까지 이른 것이다.

김령은 이번 향시의 파장을 좀 더 근원적으로 당색과 연결하여 생각하였다. 김령은 경시관 조즙을 조정한 사람을 西人 김상용이라고 보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상용은 鄭澈의 도당으로서, 지난번 己丑獄事가 일어났을 때 崔永慶을 죽이라고 주장한 疏首였으니, 그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⁷²⁾라고 기록하였다. 김상용은 당시 北人들의 배척을 받아 지방관으로 전전하던 상황이었는 데, 이 때 남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 좌도의 향시에서 서인 참시관이 응시생에게 모욕을 가해 파장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 김령의 판단이다. 결국, 선조 39년(1606) 증광시의 경상 좌도 향시가 파장된 것에는 시관의 당색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헌부에서 파장의 원인을 '매우 부당한 출제'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응시생의 입장

68)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20일.

69) 李羲權, 1983, 「東方五賢의 文廟從祀 小考」, 『全北史學』 7집, 119~121쪽.

70) 조즙은 경상 좌도의 상시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친한 경상 우도의 상주와 함창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경상 좌도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에 경상 좌도의 응시생들은 입격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도 유생의 응시를 반대하면서 파장을 나갔다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자 파장에 다시 들어왔다(『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1일, 7월 4일).

71)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18일.

72)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7월 20일.

을 반영한 당파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시의 입격자 선발에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은 광해군대에도 확인된다. 광해군 4년(1612) 증광시의 경상 좌도 향시에 경시관으로 내려온 것은 宋邦祚였고, 참시관은 상주목사 韓述과 咸陽郡守 李覽이었다.⁷³⁾ 송방조는 문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경시관으로 내려왔으며, 대북 세력으로 지목되는 사람이었다.⁷⁴⁾ 이 향시가 끝나자 그 결과에 대해 김령은 “李葦의 무리들이 시관에 표시를 해서 경시관 송방조에게 바치니, 참시관 이람이 이것으로써 私情을 많이 썼다고 한다.”⁷⁵⁾라고 기록하였다. 당시는 퇴계의 學統을 누가 계승하느냐와 관련하여 퇴계의 문인 내에 예안 趙穆 문인과 안동 柳成龍 문인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목의 문인 金中淸, 金澤龍 등이 중심이 되어 조목을 陶山書院에 從享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李葦는 김중청의 문인으로서 종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⁷⁶⁾ 따라서 김령의 기록을 통해서, 경상 좌도의 향시에서 대북 세력인 시관 송방조가 ‘무리수를 두면서’ 조목의 문인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향시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광해군 10년(1618)의 증광시에서였다. 이 때 경시관으로 내려온 정양윤과 참시관이던 고령현 감 신경문은 모두 대북 세력이었다.⁷⁷⁾ 그리고 김령은 이 향시의 결과에 대해 “경상 좌도의 동당시는 공정함이 아주 없었다. 이 때 이런 일은 이미 늘 있는 일이라 굳이 탄식할 것도 아니다. 예천의 朴守謹, 李弘經 같은 무리와 金中淸의 두 아들도 모두 입격하였는데, 한 榜에 오른 24명이 모두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한 무리로 청탁을 하고 부탁한 부류들이다.”⁷⁸⁾라고 썼다. 당시는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이 실행된 지 4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종향을 이끌어낸 조목의 문인 김중청, 박수근 등은 물론 대북 세력과 연결

73) 『溪巖日錄』, 壬子年(광해군 4년, 1612) 4월 9일, 4월 19일.

74) 『光海君日記』 권72, 광해군 5년 11월 16일(庚午).

75) 『溪巖日錄』, 壬子年(광해군 4년, 1612) 6월 15일.

76) 李尙賢, 2001,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 8, 46~61쪽.

77)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7월 23일.

78)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7월 28일.

된 사람들이 선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북 세력은 광해군 5년(1613)의 계축옥사를 계기로 비로소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지만, 광해군 6년(1614) 영창대군을 살해하면서 중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 우도의 사림에서도 분열이 나타났다. 이에 대북 세력은 지지 기반의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광해군 6년 11월에 퇴계학과이면서도 ‘친北人계’의 입장을 가진 조목을 도산서원에 배향시키도록 결정하고, 과거 시험과 관직을 매개로 안동과 예안의 조목 문인들을 회유하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있었다.⁷⁹⁾ 앞서 본 김령의 기록에 의하면, 대북 세력의 경상 좌도 사림에 대한 자기 세력화 노력은 광해군 10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향시에 정치적 동향이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향시에서는 공정하게 입격자를 선발하겠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경시관을 내려 보내고자 한 것은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네 도처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져 향시가 실시되는 경우 모든 시소에 경시관을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仁祖대부터 점차 우도에 관찰사의 보좌관인 都事를 상시관에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점차 관례가 되어갔다.⁸⁰⁾

“향시에서 좌도에는 상시관으로 경관을 내려 보내고, 우도에는 도사가 상시관을 맡는다.”는 관례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삼남에서는 도사가 응시생을 강력하게 제압하지 못하여 과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도에도 경시관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사간원에서는 경시관이든 도사이든 그 일을 맡는 사람의 자질의 문제이지, 경시관을 보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조에서 경시관을 제대로 선발, 임명하지 못하여 ‘부적격자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⁸¹⁾

향시의 경시관으로 임명되어 내려왔지만, 그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인조 13년(1635)의 증광시였다. 이 때 경상 좌도 향시의 경시관으로 내려온 사람은 예조 정량을 역임한 睦性善이었으며, 참시관은

79) 禹賢玖, 1989, 「來庵 鄭仁弘과 光海朝 政局主導勢力」, 『嶠南史學』 4, 영남대학교사학과, 107~108쪽 ; 李尙賢, 앞의 논문, 78쪽.

80) 『備邊司謄錄』 5책, 仁祖 16년 6월 28일.

81) 『仁祖實錄』 권26, 인조 10년 5월 19일(丙辰).

梁山守丞 曹臣俊과 自如察訪 尹城이었다. 이들은 문과의 향시에 앞서 생원진사시의 향시도 주관하였는데, 그 때부터 “목성선이 비록 名士이긴 하지만, 문장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시는 오직 우리나라의 시들만 이해할 정도이다. 조신준은 개성 사람으로 늙었고, 윤성은 용렬하고 비루하며 목성선 무리의 휘하이기 때문에 목성선이 과거 시험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니, 미리 살펴보건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인재를 놓칠 것이니 걱정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다.⁸²⁾

실제로 경상 좌도의 문과 향시에서 목성선은 출제를 하였지만 “論題가 좋지 않았으며, 表題도 御諱를 범하였는데, 응시생들이 나무라자 기가 꺾여 부끄러워하며 제목을 고쳤으나 더욱 좋지 못했다. 策題도 말이 되지 않았다. 목성선이 어진 선비지만 글을 짓지 못하여 헤아리지 못했으니 이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⁸³⁾라는 평가를 받았다. 목성선은 채점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이 향시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삼장을 모두 끝마친 것은 7월 27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채점을 끝내고, 7월 29일에 입격자를 발표하였다. 향시 결과에 접한 김령은 “시험보기 전부터 입격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 중에서 申弘望이 장원을 하고, 金然, 鄭弼, 李時明이 입격하였으며, 목성선과 윤성과 절친한 成以恬이 입격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입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붙었다.”⁸⁴⁾고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

김령은 이 경상 좌도의 향시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경상 우도의 향시와도 비교하였다. 당시 경상 우도의 상시관은 도사 任贊之가 담당하였으며, 玄風守丞 金世濂이 참시관을 담당하였는데, 입격자 발표는 8월 1일에 나왔다.⁸⁵⁾ 채점을 하면서는 조금이라도 혐의가 없도록 도사와 현풍수령이 함께 여러 날 동안 조용하게, 비록 탈락한 시권이라도 반드시 두 번, 세 번

82)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7월 17일. 목성선을 ‘名士’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인조 3년 檢閱로 재직하면서 광해군대 인목대비의 폐모론 문제로 쫓겨났던 仁城君 珙이 죄가 없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양사의 탄핵을 계속 받았지만, 인조에게 인성군 공을 변호한 것은 파당을 초월하여 단지 왕의 처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직언이었다고 평가되었던 것을 말한다(『仁祖實錄』 권10, 인조 3년 10월 18일(癸巳) :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27일(丙寅)).

83)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7월 27일.

84)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7월 17일, 7월 29일.

85)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3월 5일, 6월 22일.

다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⁸⁶⁾

김령이 이 경상 좌도의 향시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결한 것은 한 달 뒤였다. 당시 목성선의 부친인 睦長欽은 慶州府尹이었으며, 목성선은 이 향시를 마치고 아버지를 뵈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급급한 목성선이 어떻게 하면 빨리 채점을 마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차에, 이 경상 좌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문과에서 신흥망, 김휴, 정척, 이시명 등 몇 명을 뽑으면, 이름에 걸맞은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알려준 것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응시생들의 시권 字號를 알아 두었다가 그들을 뽑은 것이며, 나머지는 제대로 채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격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불게 되었던 것이다.⁸⁷⁾

이와 같이 인조 13년(1635) 증광시의 경상 좌도와 우도의 향시는 상시관의 경우에 그것을 맡을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경시관을 내려보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향시 시관의 문제는 참시관에도 있었다. 경상 좌도와 우도의 수령들이 '환차에 의해 서로 바꾸어 참시관에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시관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응시생을 입격시키고자 하였다.

광해군 4년(1612) 식년시의 경상 좌도 향사에서 참시관을 맡은 사람은 昌原府使 孫起陽과 尙州提督 高尙顏이었다. 이때의 시제는 '程明도가 程伊川을 천거하다.'는 것이었는데, 김령은 "많은 사람들이 고상안이 반드시 사사로운 의도가 많다고 여겼으니, 거느리고 온 무리가 대단히 많았기 때 문이었다."⁸⁸⁾라고 하여 시제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원칙대로 하자면 경상 우도 응시생은 우도의 향시에 응시해야 했지만, 시관 상피, 부자 상피 등의 이유를 대고 경상 좌도에서 응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기에 의하면, 본래 상주 출신으로서 당시 상주제독으로 있던 고상안이 이 때 의도적으로 상주의 응시생을 경상 좌도의 향시에 끌고 왔고, 그들의 입격을 위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출제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상 좌도의 수령이 경상 우도의 향사에서 참시관이 되어 자기 지역의 응시생을 입격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광해군

86)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8월 22일.

87) 『溪巖日錄』, 乙亥年(인조 13년, 1635) 7월 29일, 8월 22일.

88) 『溪巖日錄』, 辛亥年(광해군 3년, 1611) 9월 25일.

10년(1618) 증광시의 경상 우도 향시에서는 安東判官 任羲之가 참시관이 되었는데, 이 때 안동의 유생들이 경상 우도의 향시에 응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7명이 합격하였다. 당시 이 증광시는 대증광시로 실시되어 경상도 향시의 합격자는 총 48명으로 늘어나 좌도와 우도에서 각각 24명을 합격시켰는데, 안동 지역의 응시생들이 경상 우도의 향시 합격자 중 30%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안동판관 임희지가 안동의 응시생들과 미리 연통하여 시권의 첫머리 내용을 보고 채점을 한 결과였다.⁸⁹⁾

경상 좌도나 우도를 막론하고 참시관에 임명된 수령이 자기 지역의 응시생들을 향시에 합격시키기 위해 시도한 일들은 상대 지역의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공정한 선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령들은 ‘학교를 일으킨다.’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향시 입격을 그 가지적인 결과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업무 수행의 결과는 수령의 考課에 반영되었고, 자기 지역의 응시생이 향시에 얼마나 합격했는가는 수령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직결되었다. 따라서 수령들은 평상시 향교를 중심으로 居接 白日場 등을 실시하여 유생들이 과거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의욕이 과한 수령의 경우에는 유생의 참여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⁹⁰⁾ 결국, 위의 상주제독과 안동판관과 같이 향시의 참시관이 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령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5.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예안의 사족 김령이 쓴 『계암일록』을 통해서 17세기 전반 경상도 향시의 실시 시기와 합격자 수, 응시자격, 시관과 합격자 선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방 유생들이 증광시와 ‘별시’의 향시가 언제 실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향시에서 정해진

89) 『溪巖日錄』, 丁巳年(광해군 9년, 1617) 7월 28일.

90) 『溪巖日錄』, 丙午年(선조 39년, 1606) 5월 13일, 5월 19일.

수대로 입격자를 뽑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저지한 것을 통해 지방 유생들은 향시가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를 문과 급제에 도달하는 보다 가까운 길로 인식하고, 향시에 입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양반 신분으로서 향교에 적을 둔 사람 중 유별 기록이 없어야 했으며,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초시 중에서도 관시와 한성시와는 다른, 향시만의 고유한 응시자격에 해당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 유생들의 향시에 대한 인식과 욕구, 향시의 응시자격은 대체로 17세기 전반 재지사족체제가 지방에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이를 토대로 중앙에서는 붕당정치가 전개되는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7세기 전반 경상도 향시가 운영되면서는 관련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음도 알 수 있었다. 향시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과 달리 임기 동안에만 지역에 거주하는 수령과 찰방이 도내 향시에 응시하는 것이 그대로 용인되었으며, 향시 입격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시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였지만 선발에서는 시관의 당색이 반영되거나 시관의 자질 부족과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공정함과 거리가 먼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후 수령의 도내 향시 응시 문제는 규정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응시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지만, 향시 시관의 불공정한 입격자 선발 문제는 이후 중앙 정치 운영의 형태 변화와 지방 사족지배체제의 동요 속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주제어 : 문과, 경상도 향시, 계암일록, 응시생, 시관, 입격자

논문투고일 : 2013. 9. 26

논문심사시작일 : 2013. 9. 27

논문게재확정일 : 2013. 11. 5

참고문헌

1. 자료

『溪巖日錄』, 『操省堂日記』,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經國大典』, 『詳定科擧規式』, 『續大典』

2. 저서

尹熙勉, 1990, 『朝鮮後期 鄉校研究』, 일조각.
曹佐鎬, 1996,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車美姬, 1999, 『朝鮮時代 文科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차미희, 2012,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 논문

김경용, 2004,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教育法學研究』 16권 2호.
고석규, 2008, 「지방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上), 지식산업사.
朴連鎬, 1986, 「仁祖~肅宗 年間の 軍役과 校生考講」, 『정신문화연구』 28.
朴漢高, 1993, 「丙申 洪川 鄉試榜目」에 關하여」, 『人文學研究』 31집,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朴賢淳, 2006,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현순, 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史學研究』 93.
禹賢玖, 1989, 「來庵 鄭仁弘과 光海朝 政局主導勢力」, 『嶠南史學』 4, 영남대 국사
학과.
李尙賢, 2001,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 8.
李泰鎮, 1985, 「朝鮮時代의 政治的 갈등과 그 해결」,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李義權, 1983, 「東方五賢의 文廟從祀 小考」, 『全北史學』 7.
차미희, 1996, 「조선후기 문과제도 -응시자격을 중심으로」, 『史叢』 45.

320 『韓國史學報』 제53호(2013년 11월)

최은주, 2013,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大東漢文學』 38.

Kyungsangdo-Local examination of Munkwa(文科, the civilian service examination) in the former 17th centuries through 『KYUEAMILROK』 ■ ■

Mihee Cha

Through the studying 『KYUEAMILROK』,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the Kyungsangdo-Local examination of Munkwa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article intends to look at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and to find out the understanding of the examination among local confucianists and their interests.

The first result is local confucianists had a strong desire to pass the Munkwa examin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s of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had the system of Local Elit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was going through Faction Politics. The second, the Kyungsangdo-Local examinations were generally run as intended. However, the prerequisites for taking the exam and the determination of examination results by the examiner often saw rule violations. Some of the violations were corrected later, but the political turmoil caused some of the violations to worsen.

Key Words : Munkwa, Kyungsangdo-Local examination, 『KYUEAMILROK』, the examiner, the passers